

##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 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신종법인용MMF제4-26호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집합투자규약	법인형MMF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
일괄신고서	법인형MMF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보완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22년 9월 16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**집합투자규약**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9조 (운용 및 투자 제 한)	① 1. ~ 5. <생략> 6.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120일을 초과하는 행위.(다만, 제29조 1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60일) ② ~ ③ <생략> ④ <신설>	① 1. ~ 5. <좌동> 6.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<b>60일</b> 을 초과하는 행위 ② ~ ③ <좌동> ④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1. 현금 2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. 양도성 예금증서 4.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5.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(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.) 6.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이며

		<p><u>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(2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7.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</u></p>
--	--	--

◆ **일괄신고서**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본문	<p>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다. 투자제한</p> <p>① ~ 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&lt;신설&gt;</p>	<p>제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 <p>다. 투자제한</p> <p>① ~ ③ &lt;좌동&gt;</p> <p>④ <u>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<u>1. 현금</u></p> <p><u>2.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</u></p> <p><u>3. 양도성 예금증서</u></p> <p><u>4.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</u></p> <p><u>5.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(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.)</u></p> <p><u>6.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. 다만,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나목의 (2)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<u>7.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</u></p>